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8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3.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 3)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근의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등 교통편리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등 교통편리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3. 심야 시간대에 교통불편이 발생한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구체적 시간대와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3(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근의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등 교통편리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u> <u>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등 교통편리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u> <u>3. 심야 시간대에 교통불편이</u>

발생한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구체적인 시간대와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26